



## 보도자료

배 포	2020. 5. 4.(월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서 기 관	유대규( <b>☎</b> 043-719-3316)

## 5월 4일~5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공적 마스크「1인 3개」계속 시행…어린이날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5월 4일과 5월 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.
  - 오늘(5.4.)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29만 7천개이며, 어린이날인 내일(5.5.)은 총 240만 2천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특별공급	기타
5.4.(월) 공급예정량	929.7	754.4	10.2	8.6	142.9	13.6	-
5.5.(화) 공급예정량	240.2	228.2	12	-	-	-	-

- □ 공적 마스크 「1주 1인 3개」 구매를 계속 시행합니다.
  - 지난 일주일간(4.27.~5.3.) 공적 마스크 「1인 3개」구매를 시범 시행 하여 재고 추이, 재고 보유 판매처 수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, 시행 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시행합니다.
    - \* 재고보유 판매처(평균): (지난주) 85.4% → (이번주) 84.2% 판매처별 재고량(평균): (지난주) 304개 → (이번주) 282개
- □ 오늘(5.4.)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<sup>①</sup>약국과 <sup>②</sup>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<sup>③</sup>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






-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'월요일'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'1·6'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,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・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□ '어린이날'인 내일(5.5.)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,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  - 내일(5.5.)은 전국의 <sup>●</sup>약국과 <sup>②</sup>농협하나로마트(서울·경기 제외)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  -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이므로, 휴일지킴이약국·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/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□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\*\*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습니다
  - ※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,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<첨부> 참조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  - 또한 **손 씻기** 등 **생활수**칙을 잘 지키면서 **기침** 등 **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의료기관 방문** 시에는 **마스크**를 반드시 **착용**하시기 바랍니다.
- <첨부> 1.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  - 2. '마스크 구매 확대' 홍보 포스터







##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
<b>1</b> 1940년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❷ 2002년 이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<b>③</b>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
4 임신부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발급)
<b>⑤</b>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<b>③</b>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
7 병원(요양병원 포함) 입원환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입원확인서(해당 의료기관 발급)
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
3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

\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

## <첨부 2>









